

승인권자	총장	선린봉사학습센터 운영규정	관 리 번 호	3-7-07
심의·검토	기획위원회		제 정 일	2019.08.05.
작성부서	선린봉사학습센터		최종개정일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구성원과 학생의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선린봉사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봉사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봉사활동 지도·교육 및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과별 커뮤니티 서비스러닝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 대학봉사단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의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제3조 (조직) ① 센터장은 교무입학처장이 겸직한다.

② 센터의 운영관리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담당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린봉사학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 외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와 대학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학생 봉사활동의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① 센터의 재정은 대학 교비, 국고지원금, 그 밖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예·결산은 대학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등 외부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관이 정하는 회계운영지침을 따른다.

제7조 (기타) 기타 센터의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이전에 시행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